

수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24666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나1102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24666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충정 담당변호사 최준용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원

변론 종결2021. 11. 17.

판결 선고2021.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265,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29,381,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18. 4. 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성남시 분당구 E 일원에서 지하 3층, 지상 13~20층 규모의 F 아파트 G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2017. 12.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경 피고와 사이에, 위 토공 및 흙막이 공사에 관하여 토사 운반, 장비 대여, 발파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와 같은 작업을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9. 1. 21.부터 2019. 9. 21.까지 잔토처리를 위해 총 18,498대(= 일반토사 10,664 대 + 실트질 점토 840 대 + 불량토 4,473 대 + 풍화암 76 대 + 원석 2,445 대)의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토사 운반 작업을 하였고, 2019. 1. 2.부터 2019. 11. 29.까지 총 1,017대의 건설장비를 대여하였으며, 2018. 12.경 현장 부지내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및 불량토 등을 옮기기 위한 사토장을 확보하였고, 2019. 2. 18.부터 2019. 6. 13.까지 사토장을 정지, 살수, 관리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9. 2. 13.부터 2019. 6. 10.까지 총 39,222㎡ 물량의 발파를 진행하였고, 2019. 3. 13.부터 2019. 4.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과태료 2,16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토사운반대금으로 1,323,608,251원, 건설장비대여금으로 476,738,809원, 발파공사대금 181,651,180원 등 합계 1,981,998,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1) 이 사건 공사 중 토사운반 작업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덤프트럭 1대당 토질별로 ① 일반토사 109,200원, ② 실트질점토 118,800원, ③ 불량토 118,800원, ④ 풍화암 27,500원, ⑤ 원석-28,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토사운반대금을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총 1,833,335,161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1,323,608,251원 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09,836,91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2) 이 사건 공사 중 건설장비 대여로 인해 총 530,107,731원의 장비대여금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476,738,809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3,368,922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는 이 중 35,063,750원 만을 청구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사토장 확보비용 219,000,000원, 사토장 정지 살수 관리 작업비용 55,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파공사대금 189,322,000원 중 181,651,180원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670,8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적 과태료 2,1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따라서 원고는 위 각 공사대금 합계 829,381,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 1) 이 사건 공사 중 토사운반 작업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m³당 토질별 단가를 적용하여 도면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덤프트럭의 대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잠정적으로 물량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1,323,608,251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운반된 토사의 수량(원도급사업자인 D이 공사 후 도면 및 작업물량에 따라 산출한 것)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공사대금은 1,165,830,420원에 불과하여, 원고는 오히려 157,706,179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장비대여대금 30,428,461원을 미지급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 3) 원고와 사토장 확보비용 및 정지, 살수, 관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4) 피고는 발파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과지급되었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과적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적 과태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토사운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 중 토사운반 작업에 대한 대금산정 방법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중 토사운반 작업에 대해 덤프트럭 1대당 토질별로 ① 일반토사 109,200원, ② 실트질점토 118,800원, ③ 불량토 118,800원, ④ 풍화암 27,500원, ⑤ 원석 -28,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토사운반대금을 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위에서 주장하는 덤프트럭 대당 토사별 단가를 적용하여 2019. 1.부터 2019. 9.까지 월별로 9회에 걸쳐 피고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부터 2019. 3.까지의 3회차 청구분을 전액 지급하였고, 2019. 4.부터 2019. 5.까지의 청구분을 일부 지급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토사운반대금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였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서 토사 운반 날짜, 품목, 수량(덤프트럭 대수), 루베(토사수량 m³)에 일반토사 9,100원, 불량토 9,900원, 원석 2,800원, 풍암 2,5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계산하고 있음을 들어, m³당 단가를 기준으로 토사 운반대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토사 수량이 일반 토사, 불량토의 경우 12루베, 원석의 경우 10루베, 풍암의 경우 11루베로 일정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이는 실제 운반한 토사의 수량을 일일이 산정하여 적용한 것이 아닌 덤프트럭 1대 당 토사별 적재량을 미리 정해 일괄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단가에 일괄 적용한 수량을 곱하면 원고 주장의 트럭대수당 단가와 일치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화성시 동탄의 'H건물 신축공사 현장', 오산시에 소재한 'I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하여도 토사운반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서도 덤프트럭 1대 당 토질별 단가에 따라 운반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④ 원고가 운반한 트럭의 대수를 기준으로 1대당 단가를 적용하여 토사운반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m³당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토사량의 측정 단위가 트럭 대 m³로 서로 다를 뿐 양측 모두 실제 운반한 토사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실제 운반한 트럭 수에 따라 작업 물량을 계산하면 족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실시측량을 기초로 작성한 도면에 따라 D이 산출한 토사 물량을 실제 피고가 운반한 토사물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량이 원고가 운반한 트럭 수를 m³로 환산한 물량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주장할 뿐이다).

원고가 운반한 트럭의 수량은 피고의 현장소장 등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운반한 토사량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반면, 측량을 통해 작성한 도면에 따라 산출한 토사량은 그 자체로 잠정적이고 대략적인 추정치에 불과할뿐더러, 토질별 토사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반한 토사량과 객관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운반한 토사량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에 있어 토사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객관적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피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산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덤프트럭 1대당 단가를 적용하여 운반대금을 계산한 원고의 청구금액을 일부 지급한 이유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도의 차원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일응의 추정 토사수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공사가 완공되어 최종적으로 도면에 따른 토사수량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대금을 다시 정산할 의사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정산 방식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기존 거래방식과 다르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뿐더러 하도급 업체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바,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그와 같은 거래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⑥ 피고는 덤프트럭 대수를 기준으로 토사운반대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가 1대당 적재하는 토사의 물량을 결정하여 트럭의 투입회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대금을 과다지급 받을 우려가 있음을 들어 이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차될 트럭의 대수는 피고가 결정하여 지시하였고, 위 공사현장에도 피고 측의 직원이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여 위와 같은 토사적재 및 반출 현장을 관리, 감독하였는바, 원고가 임의로 토사 적재량 및 트럭의 투입회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토사 운반대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토사운반대금의 산정방법에 의해 계산한 토사운반대금은 1,729,313,300원(자세한 산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고, 위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금액은 1,833,335,161원이다. 피고가 그 중 1,323,608,25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9,836,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토사	10,664	109,200	1,164,508,800
실트질 점토	840	118,800	99,792,000
불량토	4,473	118,800	531,392,400
풍화암	76	27,500	2,090,000
원석	2,445	-28,000	-68,460,000
계	18,498		1,729,323,200

나. 장비대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장비대여에 관한 대금 30,428,461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428,4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된 장비대여대금이 총 53,368,92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35,063,75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발파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총 7,670,820원의 발파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사토장 확보비용, 사토장 정지살수관리 작업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사운반작업에서 발생하는 불량토를 옮기기 위한 사토장을 확보하고 위 사토장을 정지, 살수 관리하는 작업에 관하여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과적 과태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3. 13.부터 2019. 4.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과태료 2,16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적이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피고가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전보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바. 소결

결국 피고는 540,265,371원[= 토사운반대금 509,836,910원 + 장비대여대금 30,428,461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주옥

판사염혜수

판사조호연